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76회 1차 정례회

검 토 보 고 서

2025. 6. 19.(목)

순서	검 토 안 건	제 안
1	서울특별시 마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구청장



행정건설위원회
(전문위원 유준상)

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” 검 토 보 고

(보고자 : 전문위원 유준상)

1. 제출자 및 제출경과

- 제출자 : 구청장
- 제안일 : 2025. 5. 23
- 회부일 : 2025. 5. 23. (의안번호 : 25-62)

2. 제안이유

- 적극행정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적극 행정 전담 의사결정기구인 적극 행정위원회 구성을 통해 업무 추진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조직 내 적극 행정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적극 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조항 개정(안 제3조)
- 위원회 구성 조항 신설(안 제4조)
- 위원회 운영 조항 신설(안 제5조)
- 위원장의 직무 조항 신설(안 제6조)
- 위원의 신분보장 조항 신설(안 제7조)
-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조항 신설(안 제8조)

○ 위원의 해촉 조항 신설(안 제9조)

○ 수당 등 조항 신설(안 제10조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 법령

–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5조의2(적극행정의 장려)

–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

– 입법예고: 2025. 4. 17.~5. 7. (제출된 의견 없음)

5. 검토보고

○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적극행정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적극행정 전담 의사결정기구인 적극행정위원회 구성을 통해 업무 추진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조직 내 적극행정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.

① 조례의 개정 취지

– 현행 적극 행정 조례의 심의 기능 중심 구성에서 위원회의 설치·운영 전반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 하기 위함.

② 주요 개정내용

– 제3조 제목을 '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'으로 변경하고, 제1항 및 제3항 삭제, 제2항을 본문으로 재구성함.

-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신설하여 위원회의 구성, 운영, 위원의 신분보장, 제척·기피·회피, 해촉, 수당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.
- 기존 제4조 및 제5조는 제11조 및 제12조로 순번 변경됨.

③ 개정내용 검토

- 적극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의 조직 및 절차적 운영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, 적극 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명확히 하고, 위원회의 구성, 운영, 위원의 직무 및 신분보장, 제척·기피·회피, 해촉 및 수당 지급 등의 사항을 구체적인 규정 도입을 통해 심의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강화하고 위원의 책임성과 독립성을 제고 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6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 개정은 적극 행정의 체계적 운영과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,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사항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관계 법령

□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5조의2(적극행정의 장려)

②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적극행정위원회를 둔다. 다만, 적극행정 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사위원회(시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를 말한다)가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.